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민병덕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6008

발의연월일: 2024. 11. 28.

발 의 자:민병덕·김남희·남인순

김병기 · 장철민 · 김재원

김현정 • 이용우 • 황정아

이훈기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80세 이상의 저소득 참전유공자에게 만 생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80세 미만의 참전유공 자에게는 생계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임.

이에 생계지원금 지원의 연령 제한을 75세로 완화하여 저소득 참전 유공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고령 참전유공자의 영예로운 노 후를 보장하려는 것임.

또한, 참전유공자의 사망과 동시에 보훈지원이 단절되어 경제적 빈 곤이 심화되는 배우자의 생계 유지를 위해 참전유공자 사망 시 생활 이 어려운 배우자에게도 생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(안 제6조의3 등).

법률 제 호

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 중 "참전유공자로서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"을 "참전유공자로서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(제6조의3 및 제8조의6에 따라 예우를 받는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를 포함한다)"으로 한다.

제6조의3제1항 중 "80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게는"을 "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"으로 하고,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1. 75세 이상 참전유공자
- 2.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(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5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배우자를 말한다)

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"참전유공자가 받을 수 있는 모든 예우"를 "참전유공자가 받을 수 있는 모든 예우(제6조의3 및 제8조의6 에 따라 그의 배우자가 받을 수 있는 예우를 포함한다)"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며, 같은 조 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4항(종전의 제3항) 중

"참전유공자"를 "참전유공자 또는 그 배우자"로, "제2항"을 "제3항"으로 하며, 같은 조 제5항(종전의 제4항) 중 "제1항"을 "제1항과 제2항"으로 한다.

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제6조의3 및 제8조의6에 따라 생계지원금과 보훈재가복지서비스를 받고 있거나 받을 참전유공자의 배우자가 제 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예우를 하지 아니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(이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에 관한 적용례) 제39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참전유공자 또는 그 배우자가 이 법 시행이후에 한 행위로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조(적용 대상자) <u>참전유공자로</u>	제3조(적용 대상자) <u>참전유공자로</u>
서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은	서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
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는다.	(제6조의3 및 제8조의6에 따라
	예우를 받는 참전유공자의 배우
	<u>자를 포함한다)</u>
제6조의3(생계지원금) ① <u>80세 이</u>	제6조의3(생계지원금) ① <u>다음 각</u>
<u>상의 참전유공자에게는</u> 대통령	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
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	
수준을 고려하여 생계지원금을	
지급할 수 있다.	
<u> <신 설></u>	1. 75세 이상 참전유공자
<u> <신 설></u>	2.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
	(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
	원에 관한 법률」 제5조제1항
	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
	른 배우자를 말한다)
② ~ ⑤ (생 략)	② ~ ⑤ (현행과 같음)
제39조(이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	제39조(이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
의 배제) ① 국가보훈부장관은	의 배제) ①
이 법을 적용받고 있거나 적용	
받을 참전유공자가 다음 각 호	
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 법	
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이	

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<u>참전</u> 유공자가 받을 수 있는 모든 예 우를 하지 아니한다.

1. ~ 5. (생 략) <신 설>

② (생략)

-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제5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<u>참전유공</u> 자를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<u>제2항</u>에 따라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사람을 다시 이 법의 적용 대상자로 결정할 때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.
- ④ 국가보훈부장관은 제38조제2항에 따라 예우를 정지하거나이 조 제1항에 따라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경우에

<u>참전유공자</u>
가 받을 수 있는 모든 예우(제6
조의3 및 제8조의6에 따라 그의
배우자가 받을 수 있는 예우를
<u> 포함한다)</u>
1. ~ 5. (현행과 같음)
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제6조의3
및 제8조의6에 따라 생계지원금
과 보훈재가복지서비스를 받고
있거나 받을 참전유공자의 배우
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
에 해당하면 그 예우를 하지 아
<u>니한다.</u>
③ (현행 제2항과 같음)
<u>4</u>
참전유공
자 또는 그 배우자
<u>제3항</u>
<u>⑤</u>

--- 제1항과 제2항-----

는 범죄경력자료 또는 교정시설	
수용 정보를 관계 기관의 장에	
게 요청할 수 있다.	